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 20120100593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 2012.10.29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 2021.06.11

홈페이지 주소

www.bturn.co.kr

대표 이메일주소

poshs0318@naver.com

## 비턴 정보공개서

(주)비원에프앤씨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 (주)비원에프앤씨

####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수행 능력을 갖추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41길 9, 2층

가맹본부의 대표전화번호 : 02-418-1966

가맹본부의 대표팩스번호 : 02-423-1966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 02-418-1966

---

---

#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 (<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 호	영업표지	주 소			
(주)비원 에프앤씨	비턴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41길 9, 2층			
	법인 설립 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11.11.14	2011.11.14	박진성	02-418-1966	02-423-1966
	법인등록번호	110111-4728634	사업자등록번호	215-87-60862	

##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특수관계인 중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 경영 경험이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사용인 (임원)	박진성 (주)비원에프앤씨	비턴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41길 9, 2층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박진성	02-418-1966	02-423-1966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최윤정 (주)이든에프앤씨	월남선생 부영이빌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33길 52, 2층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최윤정	02-414-4111	02-414-4110
			법인등록번호	110111-6076429	사업자등록번호

##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비턴]이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비턴	
상 호	비턴 00점	
상표 (서비스표)		상표출원번호 2011-0037905 상표등록번호 41-0245737
상 표 (서비스표)	비턴	상표출원번호 2011-0037907 상표등록번호 41-0245787
광 고	해당 없음	

##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18년	2,217,155	199,914	2,017,240	1,258,249	339,354	303,257
2019년	2,235,143	119,100	2,116,043	743,682	70,809	98,802
2020년	2,202,046	109,064	2,092,982	477,483	-74,081	-23,061

그 근거 자료는 별첨[1]과 같습니다.

2)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는 2018년, 2019년, 2020년에 [비턴] 가맹사업 이외의 사업을 경영하지 않아 매출액은 1)의 매출액과 같습니다.

##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 업 경 력		
			기 간	소 속	담 당 업 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박진성	사내이사	2017.11.14. ~ 현재	(주)비원에프앤씨	업무총괄
		감사	2019.03.25. ~ 현재	(주)이든에프앤씨	회계/감사
	최윤정	대표이사	2011.11.14.~2017.11.14.	(주)비원에프앤씨	업무총괄 회계/감사
		감사	2017.11.14. ~ 현재		
		사내이사	2016.06.01. ~ 현재	(주)이든에프앤씨	업무총괄

##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 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0년 12월 31일	1	1	2

##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가맹본부	(주)비원에프앤씨 / 박진성	가맹사업 경영	2017.11. ~ 현재	비턴(등록번호:20120100593)라는 영업표지의 주점사업 경영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주)이든에프앤씨 / 최윤정	가맹사업 경영	2016.06. ~ 현재	월남선생(등록번호:20160828)라는 영업표지의 쌀국수전문점 경영
		가맹사업 경영	2020.08. ~ 현재	부영이빌라(등록번호:20191325)라는 영업표지의 외식사업 경영

##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출원일자 등록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 사용기간)
	영업표지로 사용	2011.11.28 2012.11.28	출원번호 제 2011-0037905 호 등록번호 제 41-0245737 호	(주)비원 에프앤씨	2022.11.28 (2022.11.28)
비턴	영업표지명	2011.11.28 2012.11.28	출원번호 제 2011-0037907 호 등록번호 제 41-0245787 호	(주)비원 에프앤씨	2022.11.28 (2022.11.28)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II. 가맹본부의 [비턴] 가맹사업 현황

1. [비턴]을 시작한 날 : 2011년 11월 14일

(직영점을 시작한 날 : 2011년 4월 20일 - 2011년 12월 20일 가맹점으로 양도)

2. [비턴]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비원 에프앤씨	비턴	최윤정	2011.11.14-2017.11.13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41길 9, 2층
		박진성	2017.11.14-현재	

3. [비턴] 업종

영업표지	업종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비턴	주점	맥주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비턴]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18.12.31.			2019.12.31.			2020.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135	135	-	111	111	-	83	83	-
서울	10	10	-	9	9	-	9	9	-
부산	12	12	-	8	8	-	8	8	-
대구	4	4	-	2	2	-	-	-	-
인천	7	7	-	5	5	-	4	4	-
광주	1	1	-	-	-	-	-	-	-
대전	3	3	-	3	3	-	1	1	-
울산	25	25	-	22	22	-	14	14	-
세종	-	-	-	-	-	-	-	-	-
경기	13	13	-	10	10	-	10	10	-
강원	7	7	-	6	6	-	3	3	-
충북	5	5	-	5	5	-	4	4	-
충남	1	1	-	-	-	-	-	-	-
전북	1	1	-	1	1	-	2	2	-
전남	7	7	-	7	7	-	6	6	-
경북	7	7	-	6	6	-	4	4	-
경남	28	28	-	24	24	-	18	18	-
제주	4	4	-	3	3	-	-	-	-

5. 바로 전 3년간 [비턴]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18	154	8	11	16	22	135
2019	135	3	13	14	12	111
2020	111	4	30	2	7	83

6. [비탄]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비탄]외에도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바로 전 3년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개)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종	가맹점/직영점의 수		
					2018.12.31	2019.12.31	2020.12.31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주)이든 에프엔씨 /최윤정	월남선생	20160828	쌀국수 전문점	65/0	50/0	35/0
		부영이빌라	20191325	외식(주점)	0/0	0/0	1/1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비탄]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20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지역	2020년말 가맹점수	2020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 <sup>2</sup> 당	상한	면적 3.3m <sup>2</sup> 당	하한	면적 3.3m <sup>2</sup> 당	
전체	83	117,266	3,088	372,355	13,611	9,231	165	자료(81개)
서울	9	103,851	3,066	260,652	11,830	50,520	1,274	
부산	8	147,058	3,217	229,239	4,051	67,534	1,486	자료(7개)
대구	-	-	-	-	-	-	-	5개 미만
인천	4	-	-	-	-	-	-	5개 미만
광주	-	-	-	-	-	-	-	5개 미만
대전	1	-	-	-	-	-	-	5개 미만
울산	14	92,554	2,446	147,184	6,064	48,662	967	
세종	-	-	-	-	-	-	-	5개 미만
경기	10	104,644	2,491	191,561	7,719	9,231	165	
강원	3	-	-	-	-	-	-	5개 미만



충북	4	-	-	-	-	-	-	5개 미만
충남	-	-	-	-	-	-	-	5개 미만
전북	2	-	-	-	-	-	-	5개 미만
전남	6	131,817	2,940	203,937	6,733	80,781	1,212	
경북	4	-	-	-	-	-	-	5개 미만
경남	18	127,406	3,469	319,200	9,504	18,031	461	
제주	-	-	-	-	-	-	-	5개 미만

당사의 가맹점사업자 연간 평균 매출액은 가맹점별 POS(Point of Sales)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당사의 사업 초기 오픈한 가맹점 중 일부는 자체 POS를 사용하여 매출자료 산정이 어렵습니다.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의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당사로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 8. [비튼]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비튼]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0년	83개	2045일(5년 7월)

####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비튼] 가맹점 관리를 위한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모든 가맹점관리를 가맹본부에서 집행합니다.

####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20년에 [비튼]과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연중	265	265	-	
광고	소계	연중	265	265	-	
판촉	소계	연중	-	-	-	

당사는 비탄 가맹사업에 관련된 광고비 및 판촉비를 손익계산서 상의 광고선전비, 판매촉진비를 근거로 기재하였습니다.

##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주)우리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지점 또는 부서	주 소	전화번호
우리은행	송파금융센터 기업창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359	02-420-8781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우리은행]에 [계약 체결 다음날까지 예치신청 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우리은행의 인터넷 에스크로 홈페이지(<http://esc.wooribank.com>)]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아 설치한 후 “예치 서비스”를 클릭한 다음 (주)비원에프앤씨를 찾아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귀하는 또한 [우리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 해당 없습니다.

##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1.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회의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정조치 대상	의결번호 (사건번호)	위반법령	위반내용 (위반법조문)	조치일자	조치내용
(주)비원에프앤씨		가맹사업법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불이행 _2015년분	2018.02.12.	과태료 부과처분

##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 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 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비탄]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7,700	계약체결 후 즉시			
가맹비	5,500	계약체결 후 즉시	개점 전: 반환	개점 후: 반환 불가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받기 위한 대가 (2,750)
			계약해지 시: 미경과 잔여 계약기간이 남은 경우 정산 후 반환		계약기간 중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허락의 대가 (2,750)
교육비	2,200	계약체결 후 즉시	교육실시 전 : 전액 반환	교육실시 후 : 반환 불가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계약이행 보증금	2,000	계약체결일	- 가맹금 미지급 및 손해배상 사유발생 - 계약종류 후 조치 영업표지철거 등 원상회복 의무의 미이행 시	계약종료 시에 잔존 채무, 손해배상액을 정산하여 잔액을 상환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금액
합 계	9,700 (부가세 포함)
가맹비	5,500 (부가세 포함)
교육비	2,200 (부가세 포함)
보증금	2,000 (부가세 없음)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m <sup>2</sup> 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80,850	2,695			99m <sup>2</sup> 기준
인테리어	자율 (미지정)	42,900	1,430	거래업체와의 계약내용에 따름 (공사마감 전)	공사 전 계약취소	
주방기기 및 집기	자율 (미지정)	9,900	330		상품 미공급시	

간판	자율 (미지정)	6,600	220		제작 전 계약취소	
가구	자율 (미지정)	6,050	202		상품 미공급시	
오픈준비물	가맹본부	2,200	73	오픈 전	상품 미공급시	
초도물품	협력업체	11,000	366	거래업체와의 계약내용에 따름	상품 미공급시	
그 밖의 개점에 소요되는 비용	자율 (미지정)	2,200~	73~	거래업체와의 계약내용에 따름	상품 미공급시 또는 공사 시공 전	별도공사 필요시 (TV, 음향기기, 바코드 리더기, 영수증 프린터, 냉·난방기, 각종 소품 등)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경우 인테리어 공사 관련, 당사의 설계 및 감리대가로 3,3m<sup>2</sup>(평)당 설계비 금 삼만원(VAT별도) 및 감리비 금 이십만원(VAT별도)을 내부 인테리어 공사 완료 후 3일 이후에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희망자	가맹본부와 협의 후, 가맹희망자가 직접 희망 영업지역 파악 → 현장조사 → 최적의 입지도출 → 가맹본부에 통지 ※ 가맹희망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입지를 정할 수 있으나 영업이 늦어지는데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 가맹본부는 점포개발과정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참여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점포의 입지선정에 대한 최종의사결정은 가맹점사업자가 합니다. ※ 가맹점희망자의 입지선정의 지연으로 영업이 늦어지게 되어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가맹점희망자가 부담합니다.	

####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없을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19세 이상일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비전]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물품 내역		공급방법	공급업체
인테리어	목공사, 도장공사, 타일공사 등	가맹계약 체결시 별도계약	자율(미지정)
주방기기 및 집기	냉장고, 가스레인지, 오븐, 주방기물 등		
간판	외부 간판, 실내·외 싸인물		
가구	테이블, 의자 등		
오픈준비물	명함, 냅킨, 전단지, 라이타, 유니폼 등		가맹본부
초도물품	주류, 식자재	추후 별도계약	협력업체
그 밖의 물품	TV, 음향기기, 바코드 리더기, 영수증 프린터, 냉·난방기, 각종 소품 등	자율	자율(미지정)

8) 귀하가 당사에 납부하는 가맹금은 분납할 수 없으며, 일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가맹계약서 해당 페이지 참조)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 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상표 사용료 (로열티)	가맹본부	월 165,000원	매월 (계약 후 지정)	-	후불제	8쪽 참조
광고 분담금	가맹본부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제작 실행비용제외	-	12쪽 참조
판촉 분담금	가맹본부	행사별로 협의하여 분담	협의	협의	-	12쪽 참조
교육 훈련비	가맹본부	수시교육, 특별교육: 실비	교육실시 전	교육실시 전	교육실시 이후에는 반환하지 않음	10쪽 참조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자율 (미지정)	실비	해당업체와의 계약에 따름	해당업체와의 계약에 따름	해당업체와의 계약에 따름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	자율 (미지정)	해당업체와의 계약에 따름	해당업체와의 계약에 따름	해당업체와의 계약에 따름	해당업체와의 계약에 따름	

점포환경개선 비용	자율 (미지정)	가맹본부 부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해당업체와의 계약에 따름	해당업체와의 계약에 따름	해당업체와의 계약에 따름	6쪽 참조
POS 사용료	미지정	해당업체와의 계약에 따름	해당업체와의 계약에 따름	해당업체와의 계약에 따름	해당업체와의 계약에 따름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 24%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 하는 날까지	-	-	19쪽 참조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0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기준: 2020년)	내용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11,629원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0.01%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추정금액으로 2020년도에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 구입요구품목의 매출액에서 해당 품목의 구매금액 합을 뺀 차액을 6개월 이상 운영한 가맹점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경우 전년도에 구입하여 금년에 공급하는 부분, 금년에 구입하였으나 아직 공급하지 않은 부분 등으로 인한 오차가 발행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 항목	내용	시기	비고
재고관리	실제재고 수량을 조사하여 장부상 재고와 비교	분기별 1회	문의: 관리팀 (02-418-1966)
회계처리	가맹점사업자의 매출누락에 대한 회계 조사 실시	1년 1회	문의: 관리팀 (02-418-1966)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갱신 시의 계약기간은 1년으로 가맹본부는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동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2,750 (변동가능)	-	-	-	
재가맹비	2,750 (변동가능)	재계약일로부터 3일 이내	반환 불가	재계약시 소멸되는 비용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관계에서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관계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양수인은 양도인의 잔여계약기간에 대한 가맹점운영권이 인정되며 양수에 따른 교육비 및 계약이행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양수인이 부담하여야 할 가맹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금액	비고
교육비 (부가세 포함)	2,200	기존의 양도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없으며 양수인은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계약이행보증금 (부가세 없음)	2,000	



---

---

####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계약이 기간만료나 해지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귀하는 계약 종료 후 7일 이내에 당사의 상호, 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당사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등 영업 관련 자산을 당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연일 1일당 금 오십만원(₩500,000원)을 손해배상액으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귀하가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당사로부터 가맹계약서 제22조 제1항의 금액 중 정산잔액과 정산서를 받을 때까지(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이나 물적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잔존채무, 손해배상액의 통지서를 받을 때까지) 위의 의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제24조 제2항에 의하여 가맹금의 일부를 반환해야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본 계약의 종료와 동시에 귀하는 당사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의 대금과 기타 귀하가 당사에게 납부할 비용 일체를 현금으로 완제하여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 물품의 재고량, 오훼손 등 관리상태,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여 반품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위의 철거, 원상복구의 비용은 계약이 귀하의 귀책사유로 종료되는 경우에는 귀하가 부담하고 당사의 귀책사유로 종료되는 경우에는 당사가 부담합니다. 다만, 합의해지의 경우에는 당사와 귀하가 협의하여 비용을 분담할 수 있다.

귀하는 계약종료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당사와의 채무를 청산하여야 합니다.

귀하는 본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당사의 경쟁관계에 있는 자에게 영업내용 등 영업비밀이나 고객에 대한 정보를 넘겨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귀하는 본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당사의 명성과 브랜드의 가치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귀하가 본 계약의 종료 이후에도 계속하여 당사의 영업표지 등을 사용할 경우 무단 상표사용에 해당하며, 귀하는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만료, 혹은 해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귀하가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시, 당사는 법적으로 이를 강제할 수 있으며 귀하는 이에 따르는 비용 및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비턴]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품목	규격	거래 형태	거래 상대방	차액 가맹금 수취여부
부동산	해당없음				X
용역	POS 사용료	시스템사용료	강제	삼성정보통신	X
인테리어공사	실·내외 인테리어	평	권장(자율)	머릿돌디자인	O
간판공사	외부 간판, 실·내외 싸인물		권장(자율)	(주)두리광고	O
주방설비	냉장고 외		권장(자율)	(주)키시스템	O
상품	그릇 외		권장(자율)	(주)주방뱅크	O
	가구 (테이블, 의자)		권장(자율)	현대인테리어 가구	O
	인쇄물 (냅킨, 전단지, 명함)		권장(자율)	기프트샵	O
	주류(맥주 외)		강제	대도실업(주)	X
	주류(맥주 외)		강제	(주)대화주류	X
	주류(맥주 외)		강제	유한회사포도주류	X
	주류(맥주 외)		강제	(유)전주호남주류 상사	X
	주류(맥주 외)		강제	합명회사청호주류	X
	주류(맥주 외)		강제	(주)세계주류	X
	주류(맥주 외)		강제	(자)국제주류	X
원·부재료	식재료		강제	(주)동원홈푸드	X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귀하가 위 표의 거래형태에 강제로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순번	품목(단위)	공급가격(원)		구분
		상한	하한	
1	호가든(병)	2,046	1,996	주류 협력사
2	버드와이저(병)	1,233	1,188	주류 협력사
3	1664 블랑(병)	3,190	3,170	주류 협력사
4	기린(병)	2,386	2,152	주류 협력사
5	아사히(병)	2,667	2,648	주류 협력사
6	칭타오(병)	2,424	2,136	주류 협력사
7	기네스(병)	3,220	3,106	주류 협력사
8	카프리(병)	1,393	1,323	주류 협력사
9	하이네켄(병)	2,689	2,288	주류 협력사
10	산미구엘(병)	2,576	2,223	주류 협력사
11	치킨가라아게(1kg*10ea)	8,400	8,400	(주)동원홈푸드
12	오징어가라아게(1kg*10ea)	11,000	11,000	(주)동원홈푸드
13	아이스슈(18.75G*8입)*8ea	21,060	18,600	(주)동원홈푸드
14	마늘빵(300g*11팩)	4,200	4,200	(주)동원홈푸드
15	싰도우(155g*10입)*6ea	12,500	12,500	(주)동원홈푸드
16	파스타소스(2kg*6ea)	12,100	12,100	(주)동원홈푸드
17	떡볶이소스(2kg*6ea)	12,500	11,300	(주)동원홈푸드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 해당 없습니다.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비탄]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액 (단위:천원)	비고
식재료	(주)동원홈푸드	(주)동원홈푸드	거래액의 10.5%	86,845	
<b>계</b>				86,845	

2) 당사가 [비탄]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경제적 이익을 수취한 사실이 없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메뉴판 (메뉴판에 표기/ 기재된 모든 상품)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 구두 경고 2회 위반 : 2회이상 서면 3회 위반 : 계약 해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 (고객)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당사와 경쟁관계 업종의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	당사나 당사가 지정한 업체가 공급하는 상품	가맹본부나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상품 등을 고객판매용도 외에 다른 가맹점에 공급하거나 당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회위반 : 1주일전 서면 통보 후 물품중단 2회위반 : 서면통보 후 시정요구 3회위반 : 계약해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권장가격(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메뉴판	메뉴판 공지	변경 시 홈페이지 공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세계맥주 전문점	비턴	해당 없음

#####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점포를 기준으로 반경500M	가맹계약서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

---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비탄'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비탄]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 해당사항 없습니다.

## 5.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비탄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가맹계약 갱신 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1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서	기간 (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 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귀하가 본 계약상의 가맹금이나 초도물품 및 물품대금 등의 채무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12조 제4항
○ 귀하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 등을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 제4항
○ 귀하가 제38조(원·부재료 공급의 중단)나 제48조(계약해지)사유에 해당되는 중대한 계약위반을 한 경우	제12조 제4항
○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 등을 귀하가 지키지 아니한 경우 가. 귀하의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영업장 또는 점포, 설비 등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 면허, 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 나.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가맹본부의	제12조 제4항

경영시스템 준수에 관한 사항 다.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사항 라.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실시하는 교육, 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다만, 교육·훈련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	--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귀하가 제9조의 영업표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38조 제1항
○ 귀하가 제10조 제2항의 영업표지 변경에 따른 조치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제38조 제1항
○ 귀하가 1개월에 걸쳐 3회 이상 원·부재료 등에 관한 대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제38조 제1항
○ 귀하가 정기납입경비(로열티 등)의 지급을 2회 연속으로 연체하는 경우	제38조 제1항
○ 귀하가 정기납입경비의 산정을 위한 총매출액 또는 매출액 증가비율을 허위로 통지하는 경우	제38조 제1항
○ 귀하가 가맹본부의 원·부재료 등의 조달과 품질관리규정을 1개월에 걸쳐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제38조 제1항
○ 귀하가 가맹본부의 원·부재료 등의 직접 조달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제38조 제1항
○ 귀하가 가맹본부와의 협의 없이 가맹점 운영을 3일 이상 방치하는 경우	제38조 제1항
○ 귀하가 가맹본부와 약정한 판매촉진활동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38조 제1항
○ 귀하가 가맹본부의 직원의 채용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38조 제1항
○ 귀하의 귀책사유로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개점이 불가능한 경우	제38조 제1항
○ 귀하가 가맹본부로부터 본 계약상의 의무위반을 지적받고도 14일 이내에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제38조 제1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제48조 제2항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제48조 제2항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제48조 제2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제48조 제2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48조 제2항
○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48조 제2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제48조 제2항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제48조 제2항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제48조 제2항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양 당사자의 합의하에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를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계약서의 수정 및 변경은 불가능하며 기존 계약서 효력만을 유지합니다.

6.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 해당 없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1개월 미만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완료	문의: 관리팀 (02-418-1966)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위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교육비 및 계약이행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초가맹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상속	가맹본부에 통지	모든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의 사망 시 그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맹점의 영업승계 의사를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가맹본부의 승인을 얻어 가맹점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다수일 경우에는 영업을 승계할 자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계약서 제46조 제1항, 제2항) 상속인은 영업개시 전까지 가맹본부가 정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에 대한 교육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가맹계약서 제46조 제6항)
대리행사	불가능	-	-
업무위탁	불가능	-	-

7.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귀하가 [비튼]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 맥주전문점 ○ 동일업종의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문의: 관리팀 (02-418-1966)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비튼]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16:00 ~ 익일02:00	월 25회 이상	문의: 관리팀(02-418-196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의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일부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3명(99㎡/30평 기준)	자율	당사의 교육을 이수한 자	-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사는 가맹점의 경영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점포를 점검하고 당사에서 정한 규정 이외의 상품취급 여부, 제품의 보관상태, 조리 및 위생상태, 서비스 상태, 회계장부 열람 등 매장운영전반에 대하여 점검 및 지도, 관리, 감독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경고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② 귀하는 당사가 가맹점의 점검이나 유지관리 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영업시간 중 언제든지 귀하의 가맹점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8. 광고 및 판촉 활동

###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비튼]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광고 전체 행사	상품광고	광고비의 50%	광고비 50% 중 가맹점의 규모(면적)에 따른 비율에 의해 산정	광고 계획 공고 → 가맹점의 광고참여 여부 결정 → 가맹점부담액 제시(명세서)	대중매체 광고 명절, Day 이벤트 행사 (전국 행사)
	상품광고+ 가맹점모집 광고	광고비의 75%	광고비 25% 중 가맹점의 규모(면적)에 따른 비율에 의해 산정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 부담	없음		
개별 행사	행사에 따라 달라짐		행사 계획 공고 → 가맹점부담액 제시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 행사 종료후 최종 분담금 확정	월별 판촉 행사	

전국단위의 광고일 경우 가맹점부담액은 각 가맹점의 규모(면적)에 따른 비율에 따라 분담합니다. 지역 광고일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부담액 부분을 분담합니다.

###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귀하가 독자적으로 '홍보물'의 제작 및 배포를 하고자 하는 경우, [비튼] 시스템의 통일성 및 [비튼] 가맹점의 명성유지를 위하여 미리 그 내용 및 방식에 관하여 사전에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9.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 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1년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 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10.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 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본 계약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 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47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즉시	없음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즉시	없음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1개월 이내 (필요시 실시)	점포 임대비용
점포실측	- 점포실측 및 투자비용 산출	5일	없음
가맹승인	- 가맹계약서 작성 - 인테리어 등 총투자비용 일부입금	정보공개서 제공 후 14일 후	IV.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참조
인테리어 공사	- 실내외 공사 - 주방집기 등 기기 입고	최대 40일	
개점 전 교육	- 이론교육, 조리교육, 서비스교육 등	3일 (현장교육)	
가맹점 가오픈	- 집기 및 인테리어 실사 - 매장 영업리허설 - 영업지원		
정식오픈	- 가맹점 영업개시 - 오픈 이벤트 - 영업지원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 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과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 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Ⅷ.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 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 (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

<p>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p>	<p>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p>	<p>수반하는 점포 환경개선 : 40%</p>	<p>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lt;분할지급 시 절차&gt;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 (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p>	<p>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 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p>
--	--	---------------------------	--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 해당 없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 해당 없습니다.

**4. 신용 제공 등 내역**

- 해당 없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 해당 없습니다.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비튼]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세 포함)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최초 교육	서비스 교육, 메뉴 및 조리교육, POS 사용 등	이론, 실습교육	개점 전	필수 교육
수시 교육	가맹본부 정책 및 신제품 교육	집단 강의	가맹본부의 정책 및 마케팅전략의 변화, 신메뉴 출시 전	필수 교육
특별 교육	역량강화교육	실습교육	가맹점 교육 요청시	

##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비턴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최소시간	비용	비고
개점 전 교육	3일	2,200	최초 계약시 이수
특별교육	1일	실비	가맹점 요청시
수시교육	1일	실비	본부의 정책 및 마케팅전략의 변화, 신상품 출시

##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 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 4. 교육·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기한 내 최초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개점이 지연되거나 가맹계약서 제26조 제1항에 의해 관리자로 근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운영 중 진행되는 교육·훈련 불참 시에는 가맹계약서 제38조에 따라서 상품공급이 중단 될 수 있습니다.



---

---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관리팀(02-418-1966)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당사의 홈페이지(www.bturn.co.kr)**에서 신청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1]

## 재 무 상 태 표

제 8기 2018년 12월 31일 현재  
제 7기 2017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명 : 주식회사 비원에프앤씨

(단위 : 원)

과 목	제8(당기)		제7(전)기	
	금 액		금 액	
자 산				
Ⅰ. 유 동 자 산		2,077,591,902		2,287,854,568
(1) 당 좌 자 산		2,077,591,902		2,287,854,568
현 금		1,514,669		2,238,559
보 통 예 금		554,426,024		529,680,869
외 상 매 출 금		671,829,986		739,103,354
단 기 대 예 금		20,000,000		30,000,000
미 수 수 익		33,318,118		30,975,570
미 수 금		0		126,719,666
가 명 비 예 처 금		13,200,000		0
선 금		817,836		157,064,315
선 금 비 용		2,704,728		2,538,259
주 입 종 단 기 채 권		779,780,541		669,533,976
(2) 재 고 자 산		0		0
Ⅱ. 비 유 동 자 산		139,563,603		176,125,484
(1) 투 자 자 산		0		0
(2) 유 형 자 산		64,755,603		81,317,484
차 량 운 반 구	77,503,904		77,503,904	
감 가 상 각 누 계 액	19,375,975	58,127,929	3,875,195	73,628,709
비 품	17,846,764		15,046,763	
감 가 상 각 누 계 액	14,157,663	3,689,101	13,028,479	2,018,284
시 설 장 치	13,000,000		13,000,000	
감 가 상 각 누 계 액	10,061,427	2,938,573	7,329,509	5,670,491
(3) 무 형 자 산		0		0
(4) 기 타 비 유 동 자 산		74,808,000		94,808,000
입 차 보 증 금		20,000,000		40,000,000
기 타 보 증 금		54,808,000		54,808,000
자 산 총 계		2,217,155,505		2,463,980,052
부 채				
Ⅰ. 유 동 부 채		199,914,977		339,997,078
외 상 매 입 금		2,532,712		34,072,439
예 수 보 증 금		8,038,750		6,344,966
예 수 증 금		57,000,000		57,000,000
선 수 금		25,500,000		92,510,589
미 지 급 세 금		47,019,709		61,233,172
미 지 급 비 용		59,823,806		88,835,912
Ⅱ. 비 유 동 부 채		0		0
부 채 총 계		199,914,977		339,997,078
자 본				
Ⅰ. 자 본		10,000,000		10,000,000

## 재 무 상 태 표

제 8기 2018년 12월 31일 현재

제 7기 2017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명 : 주식회사 비원에프앤씨

(단위 : 원)

과 목	제8(당)기		제7(전)기	
	금 액		금 액	
자 본 금		10,000,000		10,000,000
Ⅱ. 자 본 잉 여 금		0		0
Ⅲ. 자 본 조 정		0		0
Ⅳ. 기 타 포 괄 손 익누계액		0		0
Ⅴ. 이 익 잉 여 금		2,007,240,528		2,113,982,974
미 처 분 이 익 잉 여 금		2,007,240,528		2,113,982,974
( 당 기 순 이 익 )				
당기 : 303,257,554 원				
전기 : 399,909,998 원				
자 본 총 계		2,017,240,528		2,123,982,974
부 채 및 자 본 총 계		2,217,155,505		2,463,980,052

# 재무상태표

제 9기 2019년 12월 31일 현재  
제 8기 2018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명 : 주식회사 비원에프앤씨

[단위 : 원]

과목	제8(당)기		제8(전)기	
	금액		금액	
자				
I. 유 동 자 산		2,131,177,020		2,077,591,902
(1) 당 차 자 산		2,131,177,020		2,077,591,902
원 보 외 단 미 가 선 선 주		294,620		1,514,669
보 통 예 출 여 수 비 예 선 주		393,007,005		554,426,024
외 상 미 기 수 명 비 예 선 주		668,826,642		671,829,986
단 기 데 수 비 예 선 주		20,000,000		20,000,000
미 수 수 비 예 선 주		76,075,420		33,318,118
가 명 비 예 선 주		0		13,200,000
선 금 비 예 선 주		418,851		817,836
선 금 비 예 선 주		2,775,041		2,704,728
주 입 종 단 기 채 권		969,780,541		779,780,541
(2) 재 고 자 산		0		0
II. 비 유 동 자 산		103,966,450		139,563,603
(1) 투 자 자 산		0		0
(2) 유 형 자 산		46,268,450		64,755,603
차 량 운 반 구	77,503,904		77,503,904	
감 가 상 각 누 계 액	34,876,755	42,627,149	19,375,975	58,127,929
비 가 상 각 누 계 액	17,846,764		17,846,764	
감 가 상 각 누 계 액	15,819,191	2,027,573	14,157,863	3,689,101
시 설 장 치	13,000,000		13,000,000	
감 가 상 각 누 계 액	11,386,272	1,613,728	10,061,427	2,938,573
(3) 무 형 자 산		0		0
(4) 기 타 비 유 동 자 산		57,698,000		74,808,000
일 차 보 증 금		20,000,000		20,000,000
기 타 보 증 금		37,698,000		54,808,000
자 산 총 계		2,235,143,470		2,217,155,505
부				
I. 유 동 부 채		119,100,411		199,914,977
외 상 매 일 금		960,616		2,532,712
예 수 보 증 금		6,675,830		8,038,750
예 수 보 증 금		57,000,000		57,000,000
선 수 보 증 금		21,200,000		25,500,000
미 지 지 금 세 리		12,041,454		47,019,709
미 지 지 금 세 리		21,222,511		59,823,808
II. 비 유 동 부 채		0		0
부 채 총 계		119,100,411		199,914,977
자 본				
I. 자 본		10,000,000		10,000,000
자 본		10,000,000		10,000,000

## 재 무 상 태 표

제 9기 2019년 12월 31일 현재

제 8기 2018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명 : 주식회사 비컴에프앤씨

[단위 : 원]

과 목	제9(당)기		제8(전)기	
	금 액		금 액	
II. 자 본 잉 여 금		0		0
III. 자 본 조 정		0		0
IV. 기 타 포 괄 손 익누계액		0		0
V. 이 익 잉 여 금		2,106,043,059		2,007,240,528
미 처 분 이 익 잉 여 금		2,106,043,059		2,007,240,528
( 당 기 순 이 익 )				
당기 : 98,802,531 원				
전기 : 303,257,554 원				
자 본 총 계		2,116,043,059		2,017,240,528
무 채 및 자본 총 계		2,235,143,470		2,217,155,505

# 재 무 상 태 표

제 10기 2020년 12월 31일 현재

제 9기 2019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명 : 주식회사 비원에프앤씨

(단위 : 원)

과 목	제10(당)기		제9(전)기	
	금 액		금 액	
자 산				
I . 유 동 자 산		2,115,220,110		2,131,177,020
(1) 당 차 자 산		2,115,220,110		2,131,177,020
현 보 외 단 미 가 선 선 주		233,110		294,520
통 롱 상 기 수 명 급 급 임		111,984,427		393,007,005
매 출 대 수 예 처		745,898,042		668,825,642
여 금		220,000,000		20,000,000
수 익		44,772,584		76,075,420
수 금		38,170		0
비 예		7,700,000		0
급 금		1,445,679		418,851
비 용		3,045,857		2,775,041
채 권		980,102,241		969,780,541
(2) 재 고 자 산		0		0
II . 비 유 동 자 산		86,826,153		103,966,450
(1) 무 형 자 산		0		0
(2) 유 형 자 산		29,128,153		46,268,450
차 량 운 반 구	77,503,904		77,503,904	
감 가 상 각 누 계 액	50,377,535	27,126,369	34,876,755	42,627,149
비 품	17,846,764		17,846,764	
감 가 상 각 누 계 액	16,731,369	1,115,395	15,819,191	2,027,573
시 설 장 치	13,000,000		13,000,000	
감 가 상 각 누 계 액	12,113,611	886,389	11,386,272	1,613,728
(3) 무 형 자 산		0		0
(4) 기 타 비 유 동 자 산		57,698,000		57,698,000
임 차 보 증 금		20,000,000		20,000,000
기 타 보 증 금		37,698,000		37,698,000
자 산 총 계		2,202,046,263		2,235,143,470
부 채				
I . 유 동 부 채		109,064,204		119,100,411
외 상 예 수 선 미		259,999		960,616
매 입 수 보 선 미		2,695,570		6,675,830
증 금		47,000,000		57,000,000
수 금		34,726,000		21,200,000
지 급 세		7,278,090		12,041,454
지 급 비 용		17,104,545		21,222,511
II . 비 유 동 부 채		0		0
부 채 총 계		109,064,204		119,100,411
자 본				
I . 자 본		10,000,000		10,000,000

## 재 무 상 태 표

제 10기 2020년 12월 31일 현재  
제 9기 2019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명 : 주식회사 비원에프앤씨

(단위 : 원)

과 목	제10(당)기		제9(전)기	
	금 액		금 액	
자 본 금		10,000,000		10,000,000
Ⅱ.자 본 잉 여 금		0		0
Ⅲ.자 본 조 정		0		0
Ⅳ.기 타 포괄손익누계액		0		0
Ⅴ.이 익 잉 여 금		2,082,982,059		2,106,043,059
미 처 분이익잉여금		2,082,982,059		2,106,043,059
( 당 기 순 손 실 )				
당기 : 23,061,000 원				
전기 : -98,802,531 원				
자 본 총 계		2,092,982,059		2,116,043,059
부 채 및 자 본 총 계		2,202,046,263		2,235,143,470

## 손익계산서

제 8(당)기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 7(전)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회사명 : 주식회사 비원에프앤씨

(단위 : 원)

과 목	제8(당)기		제7(전)기	
	금	액	금	액
I. 매출액		1,258,249,975		2,203,273,412
상품 매출	233,195,126		249,313,072	
시설공사수입	370,195,000		1,156,769,800	
가맹비수입	93,930,985		70,173,636	
수수료수입	560,938,864		727,016,904	
II. 매출원가		267,887,167		898,447,838
상품매출원가		267,887,167		898,447,838
기초상품재고액	0		0	
당기상품매입액	267,887,167		898,447,838	
기말상품재고액	0		0	
III. 매출총이익		990,362,808		1,304,825,574
IV. 판매비와관리비		651,006,499		831,123,087
임원급여	150,000,000		113,749,980	
직원급여	235,473,965		181,125,030	
상여	5,800,000		0	
잡	0		450,000	
퇴직급여	8,631,755		165,861,916	
복리후생비	35,214,439		35,398,781	
여비교통비	12,589,682		13,994,055	
점대비	30,389,460		52,878,094	
통신비	2,293,889		1,756,131	
수도광열비	294,334		394,915	
전력비	2,357,871		2,689,029	
세금과공과금	13,525,960		8,927,140	
감가상각비	19,361,882		6,766,113	
지급임차료	15,000,000		35,400,000	
수선비	0		253,637	
보험료	7,461,131		4,894,696	
차량유지비	19,225,777		15,669,907	
운반비	689,860		791,873	
교육훈련비	2,192,100		5,173,794	
도서인쇄비	74,128		236,060	
사무용품비	908,717		1,279,755	
소모품비	5,850,616		3,789,741	
지급수수료	25,446,974		79,380,553	



## 손익계산서

제 8(당)기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 7(전)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회사명 : 주식회사 비원에프앤씨

(단위 : 원)

과 목	제8(당)기		제7(전)기	
	금	액	금	액
광고선전비	1,860,510		34,891,590	
판매촉진비	123,830		2,195,897	
건물관리비	1,500,000		3,600,000	
리스료	54,742,619		58,574,400	
V. 영업이익		339,354,309		473,702,487
VI. 영업외수익		48,911,668		31,714,103
이자수익	33,821,018		31,443,811	
채무면제이익	14,710,000		0	
잡이익	380,650		270,282	
VII. 영업외비용		15,860,954		16,519,357
이자비용	3,488,523		519,343	
기타의대손상각비	10,555,780		0	
잡손실	1,816,651		16,000,014	
VIII. 법인세차감전이익		372,405,023		488,897,233
IX. 법인세등		69,147,469		88,987,235
법인세등	69,147,469		88,987,235	
X. 당기순이익		303,257,554		399,909,998

# 손익계산서

제 9(당)기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 8(전)기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회사명 : 주식회사 비임에프앤씨

(단위 : 원)

과 목	제9(당)기		제8(전)기	
	금	액	금	액
I. 매출액		743,682,368		1,258,349,975
상품매출	173,407,314		233,195,128	
시설공사수입	63,750,000		370,195,000	
기명비수입	62,049,281		93,930,985	
수수료수입	444,465,673		560,038,861	
II. 매출원가		75,988,110		267,887,167
상품매출원가		75,988,110		267,887,167
기초상품재고액	0		0	
당기상품매입액	75,988,110		267,887,167	
기말상품재고액	0		0	
III. 매출총이익		667,694,158		990,462,808
IV. 판매비와관리비		667,694,241		651,008,409
임금급여	0		150,000,000	
직접임금급여	377,166,987		235,473,965	
상여금	13,000,000		5,900,000	
퇴직급여	13,257,411		8,531,755	
복리후생비	34,631,859		35,214,439	
여비교통비	6,713,356		12,589,682	
전대비	18,557,636		30,389,060	
통신비	2,473,379		2,293,889	
수도광열비	276,343		294,334	
전력비	2,104,003		2,357,871	
세금과공과금	11,888,360		13,526,960	
감가상각비	18,487,153		19,361,882	
지급임차료	19,500,000		15,000,000	
수선비	350,000		0	
보험료	7,145,357		7,461,131	
차량유지비	10,464,260		19,225,777	
운반비	728,700		689,990	
교육훈련비	0		2,192,100	
도서인쇄비	46,473		74,128	
사무용품비	465,908		908,717	
소모품비	4,085,527		5,850,616	
지급수수료	10,849,788		23,446,974	
광고선전비	1,275,300		1,839,510	

## 손익계산서

제 9(당)기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 8(전)기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회사명 : 주식회사 비원에프앤씨

(단위 : 원)

과 목	제9(당)기		제8(전)기	
	금	액	금	액
판매촉진비	251,100		123,830	
건물관리비	0		1,500,000	
리스료	44,063,731		54,742,619	
V. 영업이익		70,809,917		309,354,309
VI. 영업외수익		44,521,357		48,911,668
이자수익	43,199,175		33,821,018	
채무관계이익	0		14,710,400	
일자리안정자금	1,129,060		0	
잡이익	200,031		380,650	
VII. 영업외비용		1,137,283		15,860,964
이자비용	1,136,634		3,488,523	
기타의대손상각비	0		10,055,790	
잡손실	649		1,816,651	
VIII. 법인세차감전이익		114,193,901		372,405,023
IX. 법인세등		15,391,370		69,147,469
법인세등	15,391,370		69,147,469	
X. 당기순이익		98,802,531		303,257,554

## 손익계산서

제 10(당)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 9(전)기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회사명 : 주식회사 비원에프앤씨

(단위 : 원)

과 목	제 10 ( 당 ) 기		제 9 ( 전 ) 기	
	금	액	금	액
I. 매출액		477,483,874		743,682,268
상품 매출	97,792,166		173,407,314	
시설공사수입	0		63,760,000	
가맹비수입	164,104,399		62,049,281	
수수료수입	215,587,309		444,465,673	
II. 매출원가		114,125,499		75,988,110
상품매출원가		114,125,499		75,988,110
기초상품재고역	0		0	
당기상품매입역	114,125,499		75,988,110	
기말상품재고역	0		0	
III. 매출총이익		363,358,375		667,694,158
IV. 판매비와관리비		437,439,712		596,884,241
직원급여	241,246,871		377,166,987	
상여금	2,000,000		13,000,000	
퇴직급여	42,859,002		13,257,411	
복리후생비	28,258,069		33,631,859	
여비교통비	1,305,124		6,713,356	
점대비	13,413,990		18,657,636	
통신비	2,556,477		2,473,379	
수도광열비	101,202		276,343	
전력비	1,881,419		2,104,603	
세금과공과금	8,827,120		11,888,350	
감가상각비	17,140,297		18,487,153	
지급일차료	19,800,000		19,500,000	
수선비	0		350,000	
보험료	5,970,584		7,145,357	
차량유지비	13,970,211		10,464,260	
운반비	817,965		728,700	
도서관회비	309,683		46,473	
사무용품비	431,436		466,928	
소모품비	4,517,714		4,085,527	
지급수수료	8,345,005		10,849,788	
광고선전비	265,633		1,275,300	
판매촉진비	0		251,100	
리스크료	15,526,920		44,063,731	

## 손익계산서

제 10(당)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 9(전기)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회사명 : 주식회사 비원에프앤씨

(단위 : 원)

과 목	제 10 ( 당 ) 기		제 9 ( 전 ) 기	
	금	액	금	액
외 주 용 역 비	7,895,000		0	
V. 영 업 손 실		74,081,337		-70,809,917
VI. 영 업 외 수 익		51,020,337		44,521,267
이 자 수 익	45,037,521		43,193,175	
일 자 리 안 정 자 금	110,000		1,128,060	
잡 이 익	5,872,816		200,031	
VII. 영 업 외 비 용		0		1,137,283
이 자 비 용	0		1,136,634	
잡 손 실	0		649	
VIII. 법 인 세 차 감 전 손 실		23,061,000		-114,193,901
IX. 법 인 세 등		0		15,391,370
법 인 세 등	0		15,391,370	
X. 당 기 순 손 실		23,061,000		-98,802,531

---

---

별첨[2]

<가맹점사업자의 인근 가맹점사업자 현황>

※ 귀하가 장래 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지역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당사의 가맹점사업자의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점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1			
2			
3			
4			
5			
6			
7			
8			
9			
10			

**별첨[3]**

**(본부 보관용)정보공개서 제공확인서**

- 본인은 가맹본부 (주)비원에프앤씨로부터 비턴 브랜드 정보공개서를  
 년 월 일, 시 구 로  
 에서 제공 받았으며 이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였습니다.
- 또한 귀사의 정보공개서를 수령하는 경우에 귀사의 영업비밀 또는 사업에 관한 중요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또는 제 3 자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임과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민 /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합니다.

가맹희망자 성명		서명 또는 기명날인	년 월 일 (인)
전화번호			
주소			

년 월 일 가맹본부 대표(담당자) 성명: 인

-----간인 후 절취-----

**(가맹희망자 보관용)정보공개서 제공확인서**

- 본인은 가맹본부 (주)비원에프앤씨로부터 비턴 브랜드 정보공개서를  
 년 월 일, 시 구 로  
 에서 제공 받았으며 이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였습니다.
- 또한 귀사의 정보공개서를 수령하는 경우에 귀사의 영업비밀 또는 사업에 관한 중요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또는 제 3 자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임과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민 /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합니다.

가맹희망자 성명		서명 또는 기명날인	년 월 일 (인)
전화번호			
주소			

년 월 일 가맹본부 대표(담당자) 성명: 인